

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광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16.

발 의 자 : 김광철 의원·정주리 의원

찬 성 자 : 손병화 의원, 박성희 의원,
이하식 의원, 나봉숙 의원,
장종례 의원, 김영심 의원,
박종현 의원 (이상 7명)

1. 의결주문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재, 구조,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 규정(안 제2조 및 제3조)
- 지원절차 등 규정(안 제4조)
- 의무 및 지도·감독 규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」,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)
- 다. 부서협의 :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(행정안전국 도시안전과)

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지원절차 등)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교부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무)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중단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,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4.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
5.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중복지원 제한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활동,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소방기본법」

제37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)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.

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(이하 “소방업무라” 한다)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4조(경비의 부담)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·도지사가 부담한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소집수당 등) ① 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13조(임무) 제13조(임무)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필요시 조치

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- 송파구의회 운영지원팀, 임기제 8급 이재욱